

표준약관 개정 신·구조문대비표

[퇴직연금 정기예금 특약]

현 행	개 정(안)
<p>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<u>퇴직연금 사업자</u>입니다.</p> <p>제3조 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, 6개월, 1년, 2년, 3년, 5년으로 합니다. ② <u>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퇴직연금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예금의 만기 시(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) 해당 만기일에 「최초 계약기간」 단위로 자동 재예치됩니다.</u>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 가입대상 ----- 퇴직연금 사업자(이하 “사업자”라 한다) -----</p> <p>제3조 계약기간 ① <u>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</u> ----- ----- ② <u>디폴트옵션 정기예금</u>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, 계약기간은 3년 이상, 5년 이내로 합니다.</p> <p>제3조의2 만기처리방법 ① <u>확정급여형(DB) 퇴직연금</u> 1. <u>일반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만기 시, 신규일 또는 계약기간 중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</u> 2. <u>최초 신규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을 위한 운용지시서 상에 자동 재예치를 선택할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자동 재예치 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. ‘자동 재예치 이메일통지’를 신청한 예금주에게는 만기일(자동 재예치일) 1개월 전에 자동 재예치됨을 이메일로 안내합니다.</u> ② <u>확정기여형(DC), 기업형(IRP) 또는 개인형(IRP) 퇴직연금</u>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퇴직연금정기예금의 이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매월 1일의 3영업일 전에 영업점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하고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(fax, 이메일 등)으로 통보하며, 변경된 이율은 매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.</p> <p><신 설></p>	<p>1. 이 예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1조3에 의해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상환되고, 동 원금과 이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대기기간 동안 저축은행에서 동 기간 시작일 당시 결정된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여 운용 후 상환됩니다. (다만, 사전지정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는 등 불가피한 경우 2023년 7월 11일 이전까지는 재예치됨)</p> <p>2. 디폴트옵션 정기예금 중 사전지정운용방법에 펀드 상품과 함께 포트폴리오의 형태로 이 예금이 편입된 경우 예금주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만기에 해지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초 계약기간과 동일한 계약기간으로 반복하여 자동 재예치합니다.</p> <p>제5조 적용이율 및 이자계산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사업자에게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이 예금은 신규일 및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합니다. 다만,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합니다.</p>

현 행	개 정(안)
<p>제7조 중도해지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하고, 제9호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의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.</p> <p>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8조 분할지급</p> <p>① ~ ③ (생 략)</p> <p>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를 연금형태로 지급하기 위한 인출 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인출의 경우에는 분할해지 횟수에서 제외합니다.</p>	<p>제7조 중도해지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, 제9호 및 제10호 ----- ----- -----</p> <p>1. ~ 9. (현행과 같음)</p> <p>10. <u>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에 따른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의 경우</u>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 분할지급</p> <p>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제1항 및 제2항</u> ----- ----- ----- 인출, 수수료 징수를 위한 인출,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3조4 및 제13조6의 사전지정운용방법의 변경·승인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한 상품 교체를 위한 인출의 경우 ----- -----</p>